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6. 6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위치도> 참조)
- 면적 : 416,603㎡(개발제한구역 416,603㎡, 100.0%)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2020년 12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위치도 >

2. 주민의견수렴 개요

- 본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음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 공고일시 : 2016년 3월 2일(수)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 이상
 - 공람기간 : 2016. 3. 2 ~ 2016. 3. 24
 - 공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환경과, 군포시 군포2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 <일간지 공고내용> 참조
 - 주민설명회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5층 대회의실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8호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구 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계 획 명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 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규 모	929,080m(GB해제 712,309m)	416,369m(GB해제 416,369m)	139,666m(GB해제 139,452m)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공람기간	2016년 3월 2일 ~ 2016년 3월 24일 (20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과천시청 도시사업단, 서초구청 푸른환경과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환경과, 군포시 군포2동 주민센터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일 시	2016. 3.16(수) 오후 4시	2016. 3.16(수) 오전 11시	2016. 3.11(금) 오후 2시
장 소	과천시 과천동 주민센터 문화교육센터 3층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5층 대회의실	기장읍사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게재를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044-201-4105), 과천시청 도시사업단(☎02-3677-2878),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02), 부산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602),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8호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구 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계 획 명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 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림리 일원
규 모	929,080㎡(GB해제 712,309㎡)	416,369㎡(GB해제 416,369㎡)	139,666㎡(GB해제 139,45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공 램 기 간	2016년 3월 2일 ~ 2016년 3월 24일 (20일간, 공휴일 제외)		
공 램 장 소	과천시청 도시사업단, 서초구청 푸른환경과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환경과, 군포시 군포2동 주민센터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일 시	2016.03.16(수) 오후 4시	2016.03.16(수) 오전 11시	2016.03.11(금) 오후 2시
장 소	과천시 과천동 주민센터 문화교육센터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5층 회의실	기장읍사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계제를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044-201-4105), 과천시청 도시사업단(☎02-3677-2878),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02), 부산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602),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8호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구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계획명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정읍 청강리 일원
규모	929,080㎡(GB해제 712,309㎡)	416,369㎡(GB해제 416,369㎡)	139,666㎡(GB해제 139,45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공람기간	2016년 3월 2일 - 2016년 3월 24일 (20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과천시청 도시사업단, 서초구청 무분환경과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환경과, 군포시 군포2동 주민센터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3.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일시	2016.03.16(수) 오후 4시	2016.03.16(수) 오전 11시	2016.03.11(금) 오후 2시
장소	과천시 과천동 주민센터 문화교육센터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5층 회의실	기장읍사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게재를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044-201-4105), 과천시청 도시사업단 (☎02-3677-2878),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031-345-3402), 부산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2),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 (☎055-922-370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등 게시내용>

정보3.0 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뉴스
알림마당
정보마당
정책마당
기관소개

회원조절가능
+ RES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일자리정보
- 자격시험안내
- 입찰안내
- 사전규격공고
- 정부포상
- 정부정책영상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인쇄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담당부처	뉴스테이정책과	담당자	곽인영	전화번호	044-201-4105	등록일	2016-03-02	조회	128
첨부파일 1	부산기장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요약서.pdf (2943kbyte)								
첨부파일 2	의왕초평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요약서.pdf (675kbyte)								
첨부파일 3	과천주암_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요약서.pdf (8061kbyte)								
첨부파일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_공람_및_주민설명회_공고.hwp (16kbyte)								

공고 제2016-25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8호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
국토교통부장관

페이스북
 블로그
 YouTube
 twitter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전자민원신청

QUICK MENU
 NEW STAY 정착

정보공개
 정책설명회
 모바일 안내

사이버 홍보관
 주택도시기금 포털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국토교통부 청초경제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교육/영상자료실
- 홍보
- 제도교육
- 시스템교육
- 홍보/교육자료
- 사용자지원
- Q&A
- FAQ
- 공지사항
- (정부3.0)평가협의결과 홍보
- 우리동네 환경영향평가정보

평가서 초안 공람

사업명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사업위치	면적	416,369 m ²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 일원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업구분	도시개발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등 지정 또는 변경 / 개발제한구역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사업규모 : 416369 m² 사업비 : 350000 백만원 사업기간 : 2016.06.01 ~ 2020.03.31 	

초안공람 주인의견수렴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환경부	담당자	박진진
담당부서		E-mail	pnjeo@korea.kr
전화번호	044-201-7293	Fax번호	044-201-7304

초안공람

초안요약서	[ME20160020]A0의왕초평(초안) 요약서.pdf		
초안	[ME20160020]A0(초안) 0000 의왕초평 (표지 및 목차).pdf		
	[ME20160020]A0(초안) 01000 의왕초평 (제1장 요약문).pdf		
	[ME20160020]A0(초안) 02000 의왕초평 (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pdf		
	[ME20160020]A0(초안) 03000 의왕초평 (제3장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대안).pdf		
	[ME20160020]A0(초안) 04000 의왕초평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ME20160020]A0(초안) 05000 의왕초평 (제5장 지역개발).pdf		
	[ME20160020]A0(초안) 06000 의왕초평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pdf		
	[ME20160020]A0(초안) 07000 의왕초평 (제7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pdf		
	[ME20160020]A0(초안) 08000 의왕초평 (제8장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pdf		
	[ME20160020]A0(초안) 09000 의왕초평 (제9장 계획의 적정성).pdf		
	[ME20160020]A0(초안) 10110 의왕초평 (제10장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df		
	[ME20160020]A0(초안) 10120 의왕초평 (제10장 지형 및 생태축 보전).pdf		
	[ME20160020]A0(초안) 10130 의왕초평 (제10장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pdf		
	[ME20160020]A0(초안) 10140 의왕초평 (제10장 수환경의 보전).pdf		
	[ME20160020]A0(초안) 10211 의왕초평 (제10장 기상).pdf		
	[ME20160020]A0(초안) 10212 의왕초평 (제10장 대기질).pdf		
	[ME20160020]A0(초안) 10213 의왕초평 (제10장 소음진동).pdf		
[ME20160020]A0(초안) 10214 의왕초평 (제10장 토양).pdf			
[ME20160020]A0(초안) 10220 의왕초평 (제10장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df			
[ME20160020]A0(초안) 10230 의왕초평 (제10장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df			
[ME20160020]A0(초안) 10310 의왕초평 (제10장 환경친화적토지이용).pdf			
[ME20160020]A0(초안) 10320 의왕초평 (제10장 인구 및 주거).pdf			
[ME20160020]A0(초안) 10400 의왕초평 (제10장 일조장애).pdf			
[ME20160020]A0(초안) 11000 의왕초평 (제11장 종합평가 및 결론).pdf			
[ME20160020]A0(초안) 12000 의왕초평 (제12장 부록).pdf			
초안 공고일	2016.03.02	초안공람기간	2016.03.02 ~ 2016.03.24
공람장소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환경과, 군포시 군포2동 주민센터		
설명회장소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5층 대회의실		
설명회일시	20160316 11시	의견제출기간	2016.03.02 ~ 2016.03.31
부서명	-	전화번호	-



< 주민설명회 개최전경 >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수렴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 시 질의에 대한 반영여부는 다음과 같음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 고
설명회	주민	기타	○45년동안 그린벨트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러 왔으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며, 수질, 소음진동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주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금회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향후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겠음	-
			○오늘 주민설명회에서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잘 듣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 진행시 주민에게 정식 통보 바람	○향후 보상 관련 설명회 개최 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실시하겠음	-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토지주나 지역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	○향후 관련법 및 보상업무 적법절차에 따라 해당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고 지구지정을 하는 것인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함	-
			○2016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촉진지구 지정고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음. 그러면 6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건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금액으로 수용이 되는 것인지	○2016년 6월 지구지정 예정이며, 이후 보상계획 일정이 수립될 계획임	-
			○지금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주민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내용의 설명회를 하는줄 알았음. 수용절차의 입안으로 절차에 따른 것만 진행될 뿐임	○금회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향후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겠음	-